

# 베트남 국제 커피 & 디저트 페어 참가 신청(계약)서



## 1. 신청(계약)자 정보

업 체 명 (사업자등록증기준)	(국문)		
	(영문)		
사업자등록번호		대 표 자	
우편물 수령 주소	우편번호( )		
담 당 자 명		부서 및 지위	/
전 화		팩 스	
이 메 일		홈 페이지	
주요 출 품 품 목	(국문)	(영문)	

- 상기 사항 중 변동 사항 발생 시 VIET COFFEE FAIR 2017 사무국으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사무국 연락처: 02-6000-1434/vietnam@coex.co.kr)
- 전화, 팩스, 이메일, 주소는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수신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해주시시오.

## 2. 참가 신청/계약 내역

구 분	독 립 부 스			조 립 부 스			프리미엄 부스(6부스 이상)		
	V	단 가	부스수	V	단 가	부스수	V	단 가	부스수
조 기 신 청 (~2017. 1. 31)		2,500,000/부스			2,700,000/부스			3,900,000/부스	
일 반 신 청 (~2017. 4. 1)		2,700,000/부스			2,900,000/부스			4,100,000/부스	
합 계									

- 조기신청은 2017년 1월 31일까지임 / 단위 : 원
- 독립부스는 부스 면적만 임차(1부스 기준 3m x 3m), 별도로 부스 시공이 필요합니다.
- 참가신청(계약)서 송부 시,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
- 계약금(부스비 총액의 50%)은 참가신청(계약)서 제출로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입금은행 : 신한은행 / 계좌번호 : 140-000-113217 / 예금주 : 코엑스**

당사는 VIET COFFEE FAIR 2017의 전시회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을 확인하였으며,  
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상기의 내역으로 참가신청(계약) 합니다.

(본 계약서에 날인함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, 상기인은 참가업체를 대표하여 본 계약서를 이행할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었음을 보장합니다.)

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청인(대표자)\_\_\_\_\_ (인)

## 참가 규정 및 계약 조건

### 제1조 용어의 정의

‘전시회’라 함은 베트남 국제 커피 & 디저트 페어 2017를 말한다. ‘전시자’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(계약)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,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. ‘주최자’라 함은 코엑스(Coex)를 말한다.

### 제2조 전시부스 할당

주최자는 신청 접수순, 전시품목, 참가규모,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.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게 할당된 전시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으로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### 제3조 참가비 납부절차

참가신청(계약)서는 코엑스(Coex)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이와 동시에 참가비(부스 비용)의 50%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잔금(부스비용의 50%) 및 부대시설 신청비용은 2017년 4월 28일까지 납부한다.

### 제4조 참가신청(계약) 해지

전시자가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주최자가 정한 전시회 운영규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,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(계약)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### 제5조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위약금

전시자가 참가신청(계약)서 제출 후 신청한 전시부스 일부 또는 전체를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취소 후 15일 이내에 코엑스(Coex)에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납입을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.

<위약금 규정>

- 2017년 4월 1일 이전  
: 참가비의 50% X 취소면적/신청면적
-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
: 참가비의 80% X 취소면적/신청면적
- 2017년 5월 1일 부터  
: 참가비의 100% X 취소면적/신청면적

### 제6조 전시품 운송 및 통관

전시품 운송 및 통관은 전시자의 책임 및 결정사항으로, 전시자는 운송 및 통관절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주최자에게 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
### 제7조 설치 및 철거

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### 제8조 주최자에 대한 정보 제공

전시자는 주최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전시회 참가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장치물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### 제9조 보험, 보안 및 안전

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,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계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. 단, 도난, 파손, 분실 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.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,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, 파손, 분실 등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.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, 주최자는 필요시 시공 작업 및 제품 시연을 제한할 수 있다.

### 제10조 전시부스 활용

전시자는 참가신청(계약)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 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.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된 면적을 벗어날 수 없으며,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주최자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 내 판매행위는 일체 금지한다.

### 제11조 전시회 변경

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주최자는 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. 단, 위 기상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전시회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### 제12조 보충규정

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 전시자는 전시장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# 제13조 분쟁해결

본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며,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.

위 참가 규정 및 계약 조건을 모두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

대표자(신청인) :

(인)